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백영화
2018. 8. 27.

목차

- I. 검토배경
- II.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국내 사례
- III.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해외 사례
- IV.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 제안

I. 검토배경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

•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 보험 모집 자격 규제

규제 내용		위반 시 제재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집을 할 수 있는 자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및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제한됨 ※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등록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자격자의 보험 모집 시 형사처벌 대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업법 제99조 제1항 및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는 원칙적으로 무자격자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징금(보험회사) 과태료(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모집종사자) 모집종사자의 경우 무자격자에 지급한 수수료 금액에 따라 주의·경고·업무정지·등록취소 처분 가능

- 보험 모집 행위 규제 (설명 의무, 특별이익 제공 금지 등)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

-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의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해 별도로 자세하게 정하고 있지 않음

원론적 정의 규정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는 대리인이 행한 보험계약 체결 행위의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법률 행위이므로 그 의미가 비교적 명확할 수 있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일체의 사실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매우 광범위한 개념

- 개별 사안에서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
 - 가망고객의 발굴에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행위가 보험 모집 행위인지, 어떤 행위는 모집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단순한 소개·안내 등의 행위인지 명확한 구분이 어려울 수 있음
 - 특히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마케팅 방법(예: 가격비교사이트 등)이 등장하면서 보험 모집 행위와 그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질 수 있음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성

-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정립된다면 법적 불명확성을 낮추고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국내 및 해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기준을 제안해보고자 함

II.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국내 사례

-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 및 기타 행위의 구분
-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판례
-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유권해석 사례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 및 기타 행위

•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의미
-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상법상 중개 행위에 관한 해석론을 참고해볼 수 있음

상법상 중개대리상 또는 중개인 조항 관련 “중개”의 의미에 대한 해석

중개란 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교섭하여 그들 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력하는 행위로서, **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를 의미하는 것



단순히 당사자 일방에게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거래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와 구분되는 기타 행위 유형

- 모집 광고 행위,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 상담 또는 소개 행위

보험업법상 모집 광고 행위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가 보험 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별도로 규제하고 있음
 - 보험업법은 별도로 광고에 대한 정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광고에 대한 정의 규정을 참고로 할 수 있음
 - * 사업자등이 사업자 자신이나 다른 사업자, 또는 상품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인터넷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PC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
 - 보험 상품의 필요성 환기, 보험 상품의 가격 특성 및 보상 품질, 보험 상품 보장 내용의 특징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이라도 포함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임

보험업법상 모집 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

- 광고의 원칙: 보험계약자가 보험 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함
- 적극적 기재 사항: 보험회사 및 보험 상품의 명칭,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주계약 및 특약별 주요 위험 및 보험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등
- 금지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나 면책사항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
- 광고 방법: 글씨의 크기, 음성의 강도·속도 등
- 보험협회의 확인: 상품광고 및 판매방송에 대해 협회 내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자료: 보험업법 제95조의4,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4,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4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

- 보험업법은 보험료·보험금 등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① 보험협회, ②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 ③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외의 자로서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려는 자(“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가 비교·공시를 할 수 있음
 -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 외의 자의 비교·공시를 허용함으로써, **모집 행위와 구분하고 있음**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준수 사항

-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
-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 전문용어 또는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을 연계하여 제공할 것
- 보험상품 비교·공시기관의 기본적인 검색기능과 연계하고 포괄적인 상품검색 및 재검색 기능을 제공할 것
- 비교·공시 사항은 광고 등 상업적 용도로 제공하는 정보와 명확히 분리하여 제공하되, 상업적 정보보다 우선하여 제공되도록 할 것
-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상품에 대해 보장내용 및 보험료,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에 대한 내용을 비교·공시할 것**

자료: 보험업감독규정 제7-46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5-11조의3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의 비교·공시 행위

- 법규상 요건을 갖춘 비교·공시는 객관적인 정보 제공 기능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해준 것으로 보임
 - 모집 자격 없는 자가 비교·공시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보험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해야 하고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만 비교·공시해야 함
 - 이러한 경우 특정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소비자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고려
 - 만약 모집 자격 없는 자가 일부 보험회사의 상품들만 비교·공시하거나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은 정보 외에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천을 더하여 비교·공시하는 경우 등이라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따져볼 필요

보험업법상 상담 또는 소개 행위

- 보험업법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 모집 관련 조항에서는 상담 또는 소개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음

보험업법 제83조 제2항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원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점포별로 2명의 범위 내에서 모집종사자로 등록된 소속 임직원에게만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음(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음
- 반면, 모집과 별도로 상담·소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모집에는 이르지 않는 또는 모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모호한 단순 상담·소개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함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2367 판결 사안의 사실관계

- ① A보험대리점(원고)은 B금고와 C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광고홍보 및 입점 계약을 체결
- ② B금고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C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배너 광고를 게시하고 사업장 내에 C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관한 안내자료를 비치
- ③ B금고 고객이 C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관하여 문의를 하면서 가입희망의사를 나타내는 경우 또는 B금고 직원이 스스로 고객에게 C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그 고객이 가입희망의사를 나타내는 경우,
- ④ B금고 직원은 해당 고객에게 ‘자동차보험 기초자료 중 피보험자사항 및 차량사항’,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A보험대리점에 송부함
- ⑤ A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해당 고객에게 별도로 연락하여 구체적 계약 상담 및 보험계약 체결을 진행
- ⑥ A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체결 건수를 기준으로 B금고에 광고홍보비를 지급



A보험대리점의 B금고에 대한 광고홍보비 지급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이라는 이유로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처분 → A보험대리점이 금융위원회의 보험대리점 등록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

• 법원의 판단: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

<p>모집 행위의 판단 원칙</p>	<p>“어떠한 행위가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중개 또는 대리하는 자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p>
<p>보험 모집 행위의 유형</p>	<p>①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등 보험계약의 유인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행위 <p>② 보험 상품의 판매를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 내용 설명 행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약관 등에 대한 내용 설명, 보험계약 청약서의 내용 및 기재사항 설명, 보험료의 산출과정 및 내용 설명,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의 설명 등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

• 법원의 판단: B금고의 행위에 대한 판단

- B금고가 구체적인 상품 설명 및 상품 설계를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권유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서 보험 모집 행위를 수행하였다고 판단함

법원의 고려 사항

- 보험 모집은 보험계약자 유치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B금고가 **잠재고객 발굴** 역할을 담당 (특히 해당 보험이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이라는 점에서 **잠재고객 발굴**이 보험 모집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보험계약자가 처음 접하는 자가 B금고이고 자동차보험 기초자료 양식에도 B금고 명의로 기재되어 있어,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B금고도 모집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음
→ B금고는 단순한 보조 행위가 아닌 **공동모집**을 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

- 다만 B금고의 행위 중 인터넷 홈페이지상 **배너광고 게시** 부분은, 잠재적인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 상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홍보행위**에 불과하여, 이러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행위 자체는 **모집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음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

• 법원의 판단: A보험대리점의 광고홍보비 지급 행위에 대한 판단

- A보험대리점이 B금고에 지급한 광고홍보비는 그 지급 기준이 오로지 B금고 직원들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건수라는 점에서, 실질은 B금고가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준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
- 아울러,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서 ‘모집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모집 행위’ 자체 뿐만 아니라 ‘모집과 관련한 행위’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
- 해당 사안에서 설사 B금고가 담당한 행위를 모집 행위 그 자체로는 볼 수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모집 과 관련한 행위에는 해당하므로 A보험대리점이 그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것은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 위반이라는 것임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5. 5. 28. 선고 2013구합62367 판결)

• 판결에 대한 평가

- 보험 모집 행위 판단에 대한 원칙 및 보험 모집 행위의 주요 유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
- 다만, 모든 **잠재고객 발굴 행위**에 확대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
 - ✓ 판결에서는 B금고의 행위를 모집 행위로 판단함에 있어 잠재고객 발굴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근거 중 하나로 제시
 - ✓ 해당 사안의 경우 B금고의 행위를 종합적으로 보면 모집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잠재고객 발굴, 고객에게 보험 가입 적극 권유, 보험 가입 서류 작성에도 관여) → 그러나 **잠재고객 발굴에 일정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당 판결을 근거로 바로 모집 행위로 판단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의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모집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까지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 ✓ 해당 조항은 무자격자의 모집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기본적으로 **모집 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 ✓ 보험업법 제99조 위반 시 **행정제재**(모집종사자의 경우 위반 금액에 따라 **영업정지·등록취소** 처분도 가능)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당 조항의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 ✓ 모집과 관련한 행위에 대한 대가 지급을 금지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조항을 두는 등의 **입법적 방법** 고려 필요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

• 보험 모집의 범위 관련

2006. 6. 27.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회신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모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법 제2조에서는 모집을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범위 등을 지정하고 있지는 않음 • 그러나 보험 모집의 중요성 및 보험계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모집종사자 및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라고 해석함이 타당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

•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광고비 지급 관련 (1)

2008. 12. 24.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회신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모집인이 아닌 일반기업과 제휴를 맺을 경우 보험 모집과 광고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일반기업 사이트에 배너나 링크 등을 통해서 보험대리점 사이트로 유입되어 실적이 발생하고 이 실적을 기준으로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9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인지?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모집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99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

•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광고비 지급 관련 (2)

2017. 6. 23.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회신 등*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휴사와 광고 제휴 마케팅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 체결 건수(또는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포털 등에서 배너 광고 등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직·간접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행위 요소가 없어 '모집'으로 보기 곤란하며 '모집 광고'에 해당함 • 보험회사가 인터넷 포털의 모집 광고에 따라 체결된 보험계약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수수료를 지급하여도 이는 '모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업법 제99조에 위반되지 않음 • 다만 배너 광고를 게시하면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이고 개별적인 권유 행위 등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성이 있음

* 동일한 취지로 2015. 5. 14. 법령 해석 회신, 2015. 8. 28. 법령 해석 회신, 2017. 6. 15. 법령 해석 회신, 2017. 7. 26 법령 해석 회신이 있음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

• 소개·추천 관련 (1)

2015. 4. 30.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회신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험계약자, SNS 이용자 등이 지인을 보험회사에 소개하거나 지인에게 보험 상품을 추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 99조 제1항 위반인지?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상품의 모집 행위는 잠재적인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일련의 보험 상품 판매활동으로 잠재적 보험계약자를 소개하거나 그에게 보험 상품을 소개하는 행위를 포함함 • 보험계약 체결 권유는 모집의 범위에 포함되며, 보험업법 제83조 제2항은 “모집” 금지와 함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기존 보험계약자나 SNS 이용자 등이 지인을 보험회사에 소개하거나 지인에게 보험 상품을 추천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등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에 따른 대가 지급에 해당 • 따라서 보험회사가 기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지인의 소개 또는 지인에게 보험 상품을 소개하게 하고 그 결과 보험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기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고 모집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

• 소개·추천 관련 (2)

2017. 4. 18.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회신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이나 안내 없이 단순히 계열 보험회사에 상담할 것을 안내하거나 계열 보험회사의 담당자에게 소개하는 행위가 보험업법상 모집에 해당하는지?
회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점포 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행) 소속 직원이 개별 보험 상품의 체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판매를 위한 권유, 설명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합점포 내 보험지점에서 상담 받을 것을 안내하거나 동 보험지점의 직원을 소개해주는 행위는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보험업법 제83조 제2항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내 보험 상품을 모집할 수 있는 2인 이외의 자로 하여금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고, 이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 종사자를 2인으로 제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 이를 고려하면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지점에 고객을 소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소개의 대가를 지급받는 것은 실질적인 보험 상품의 모집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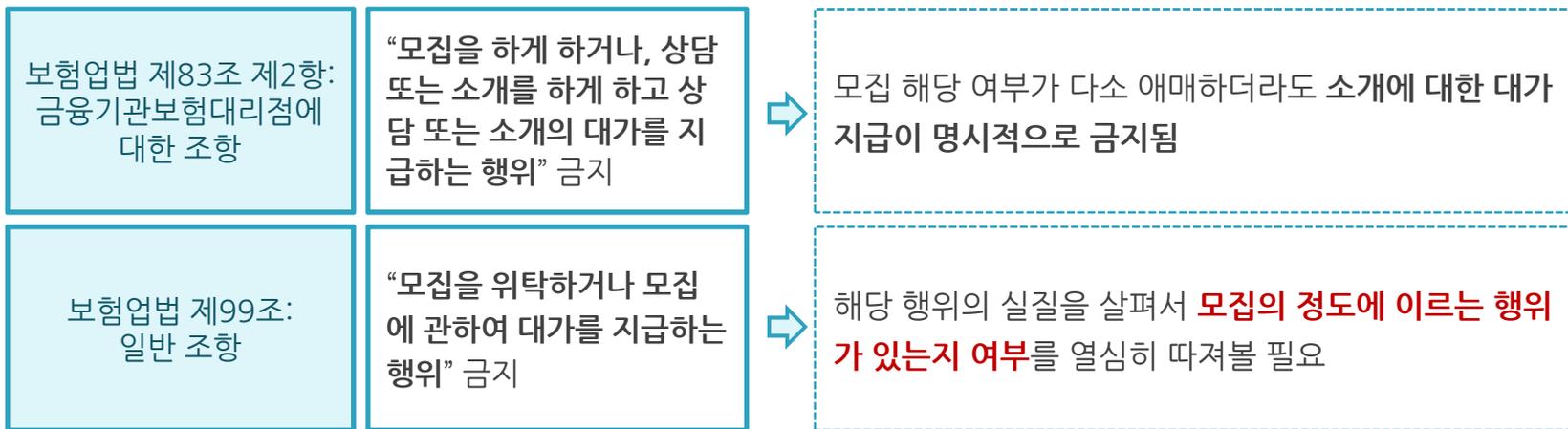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

-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분석: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광고비 지급 관련
 -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모집에 따른 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모집으로 해석하였으나, 최근에는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대가 지급**’이라는 요소를 절대적 판단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행위의 실질**’에 따라 판단
 - 행위의 실질이 ‘모집’이 아닌 ‘광고’라면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광고 수수료가 지급되더라도 모집에 대한 대가 지급이 아니라는 것
 - ✓ 모집과 광고의 구분은 ‘보험계약을 직·간접으로 체결하거나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적극적·개별적 행위 요소가 있었는지’ 여부를 그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이처럼 행위의 실질을 살펴서 **모집 대가**인지 **광고 대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
 - ✓ 어떠한 행위에 대해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실제로 보험 가입 권유까지 하게 될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겠으나, 정책적으로 이를 방지하고자 한다면 광고나 소개 등의 대가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금지하는 방법**을 고려
 - ✓ 단지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대가가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행위의 성격 자체를 모집으로 단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음

보험 모집 행위에 관한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사례

• 유권해석 사례에 대한 분석: 소개·추천 관련

- 소개나 추천 행위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모집으로 보는 입장
- 그러나 소개·추천이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유형의 행위들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먼저 **해당 행위의 실질을** 살펴서 과연 모집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필요
 - ✓ 특정 보험 상품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이 전혀 없이 단순히 지인을 보험회사·모집종사자에게 소개하거나 지인의 정보를 보험회사·모집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우라면?
- 특히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아닌 사안에서 보험업법 제83조 제2항을 근거로 들어서 소개에 대해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모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려움



<참고> 기타 금융관련법상 권유 행위 등 관련 해석 사례

•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행위 관련 판례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투자권유란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것이므로 민법상 청약의 유인, 즉 투자자로 하여금 청약하게끔 하려는 의사의 표시에 해당하여야 하며 따라서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나 계약 체결의 권유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한 상담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설명, 계약이 이미 체결된 이후의 발언 등은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그러나 단순한 상담이나 금융투자상품의 소개·설명 등의 정도를 넘어서 이와 함께 계약 체결을 권유하고 나아가 그러한 소개·설명 등을 들은 투자자가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에 나아가거나 투자 여부 결정에 그 권유와 설명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투자권유에 해당하는지는 설명의 정도,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실무처리 관여도, 이익 발생 여부 등과 같은 투자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도14924 판결)
-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소개한 사안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과거 거래 등을 통해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고객에게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취급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단순히 소개하는 정도를 넘어 **계약 체결을 권유함과 아울러 그 상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나아가 그러한 설명 등을 들은 고객이 해당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계약 체결에 나아가거나 투자 여부 결정에 그 권유와 설명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았다면,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와 같이 평가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업자는 직접 고객과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객에 대하여 해당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적합성 원칙의 준수 및 설명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7498 판결)

<참고> 기타 금융관련법상 권유 행위 등 관련 해석 사례

•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행위 관련 유권해석 사례

- 변액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생명보험회사의 변액보험 상품별 펀드 수익률 및 수익률 랭킹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무면허 투자자문업에 해당할 소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기존 공시자료를 취합하여 전체 변액보험 상품의 펀드수익률 등을 별도의 대가 없이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는 차원이라면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정보 제공이 추천이나 가입 유도, 가입 시 판매사나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등 간접적이라도 자문이나 투자권유 행위 등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이나 투자권유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답신(2017. 11. 7.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회신)
- 농협은행이 부동산담보신탁의 소개 업무를 지역 농·축협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사안에서, 표현상 소개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형태가 담보계약의 체결 의사가 있는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특정업자(농협은행)의 금융상품을 권유한다는 점과 단순히 소개 행위 자체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한다는 점에 의할 때 투자권유에 해당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2017. 1. 9.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회신)
- 금융투자업자가 증권계좌를 개설하는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소정의 금전 등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의 행위는 그 대가를 지속·반복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는 점** 및 신규 고객이 해당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행위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규 고객을 소개하는 기존 고객은 무등록 투자권유대행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해석(2017. 7. 25.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회신)
- 투자중개업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선물 계약을 체결하는 신규 고객을 소개한 기존 고객에게 소정의 금전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러한 기존 고객의 행위는 추천 인원에 따라 그 대가를 지속·반복적으로 수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투자권유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2017. 7. 12.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회신)

<참고> 기타 금융관련법상 권유 행위 등 관련 해석 사례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모집 행위 관련 유권해석 사례

- 신용카드 회원이 지인에게 신용카드를 추천하여 지인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그 추천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한 사안에서, 금융위원회는, 지인 추천을 통한 경제적 대가 지급이 신용카드업자 주도로 반복적으로 또는 과다하게 제공된다면 신용카드업자는 실질적으로 모집인 등록 없이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의 등록 및 모집 질서 유지를 규정한 여전법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회원이 지인 추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여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모집에 해당한다고 해석**. 다만 지속적·반복적인 추천 또는 신용카드업자 주도의 지인 추천 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라, **지인에 대한 일회적 단순 소개에 해당한다면**, 신용카드업자가 지인을 추천한 카드 회원에게 합리적 범위 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답신(2015. 12. 23.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회신, 2017. 10. 18.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회신)
- 신용카드업자가 제휴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카드 상품 광고를 하고 그 광고를 통해 고객이 유입되어 카드가 발급된 경우 제휴사에게 그 발급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제휴사에 카드 상품 ‘광고’에 따른 발급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모집 자격이 없는 자에게 모집에 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여전법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만 신용카드 회원의 ‘모집’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법령해석 회신문에서 일률적으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임(2018. 1. 18. 금융위원회 법령 해석 회신)

III.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해외 사례

- 일본 사례
- 미국 사례
- 영국 사례

일본 사례

•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 일본 금융청(金融庁) 감독지침에서 보험 모집 행위의 유형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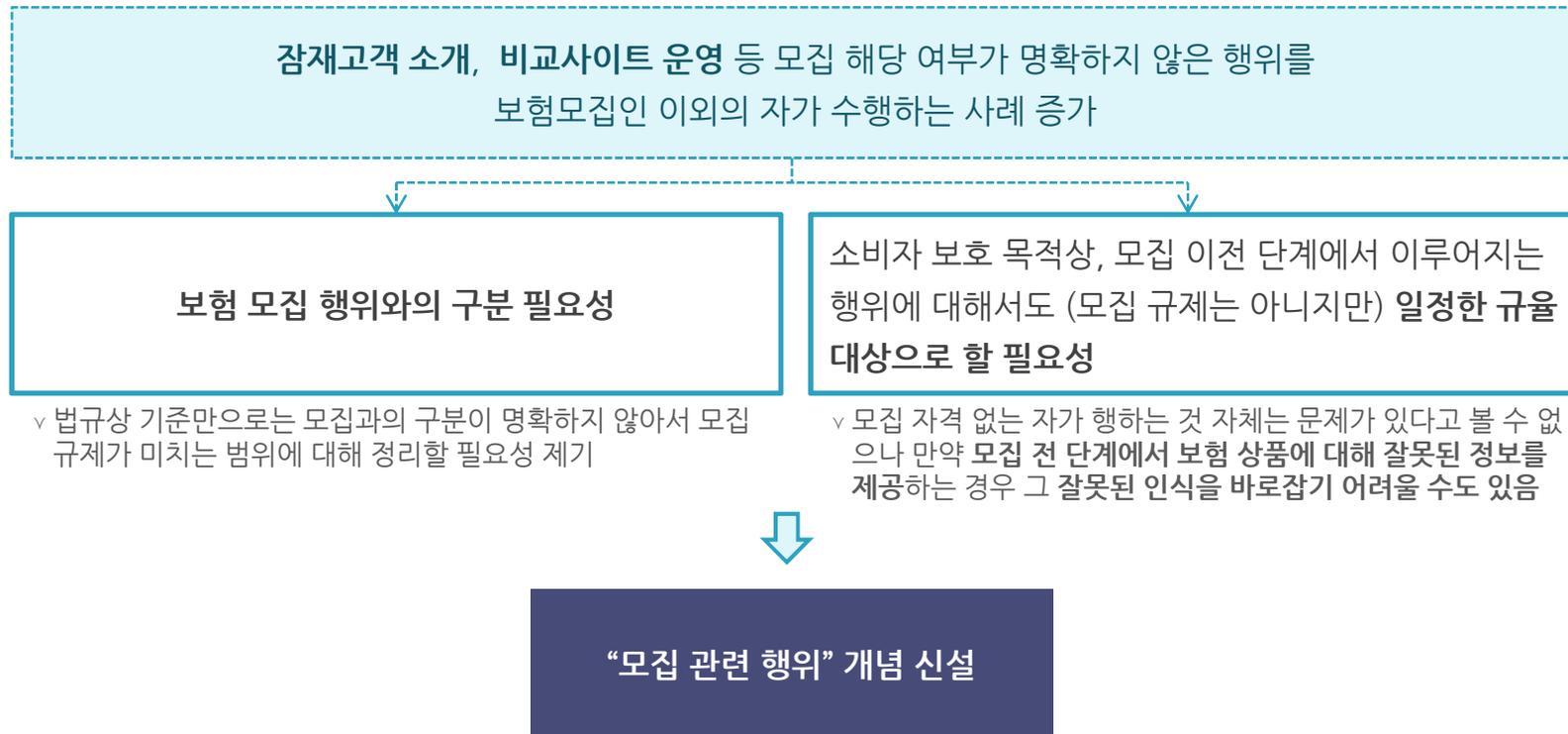
※ 「보험회사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지침」(保険会社向けの総合的な監督指針)

일본 보험업법 제2조 제26항	보험 모집이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를 의미함
일본 금융청 감독지침 II-4-2-1(1)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保険契約の締結の勧誘) ②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를 목적으로 한 보험 상품의 내용 설명(保険契約の締結の勧誘を目的とした保険商品の内容説明) ③ 보험계약 신청의 수령(保険契約の申込の受領) ④ 기타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 또는 매개(その他の保険契約の締結の代理又は媒介) <p>※ ④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 등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나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과 자본 관계를 가지는 경우 등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행하는 모집 행위와 일체성·연속성을 추측하도록 하는 사정이 있을 것과 (ii) 구체적인 보험 상품을 추천·설명할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p>

일본 사례

• “모집 관련 행위” 개념 도입

- 일본 금융청은 2015년 감독지침 개정을 통해 “모집 관련 행위” (募集関連行為)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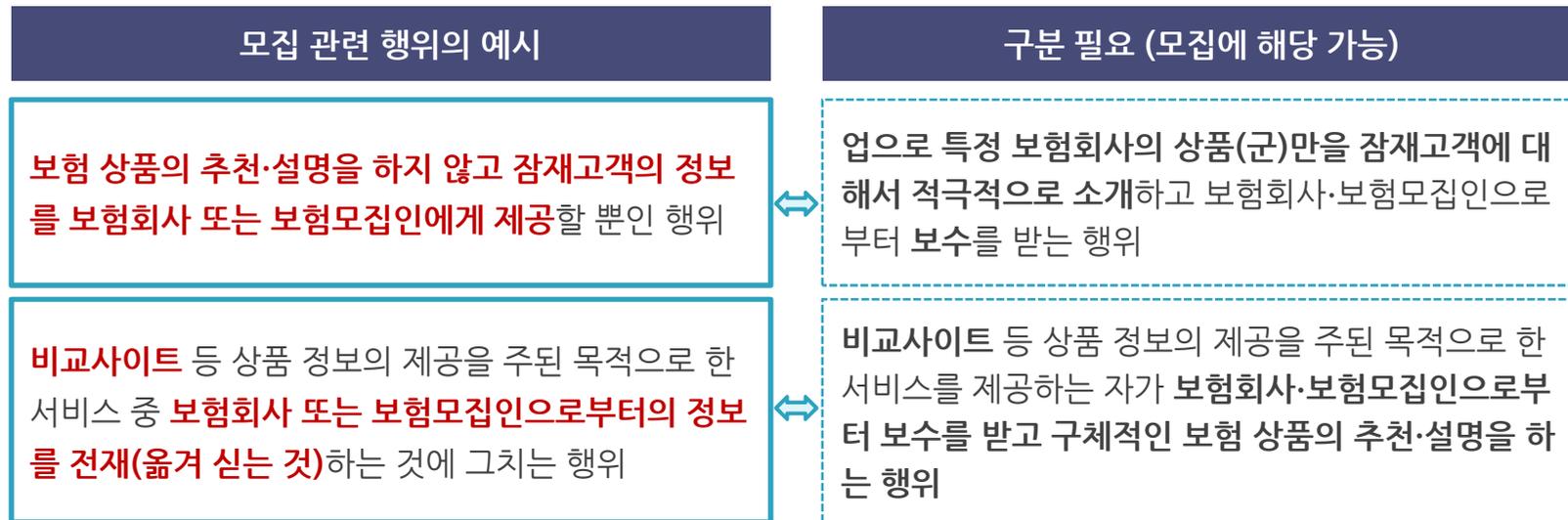
∨ 법규상 기준만으로는 모집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모집 규제가 미치는 범위에 대해 정리할 필요성 제기

∨ 모집 자격 없는 자가 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만약 모집 전 단계에서 보험 상품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어려울 수도 있음

일본 사례

• 모집 관련 행위의 의미

- 일본 금융청 감독지침상 모집 관련 행위란 “**잠재고객의 발굴에서부터 계약 성립에 이르기까지 넓은 의미에서**의 보험 모집 프로세스 중에서 보험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로 정의



- * 보험회사 또는 모집종사자의 지시를 받아 행하는 상품안내전단지의 단순 배포, 콜센터 오퍼레이터가 실시하는 사무적인 연락 접수나 사무 절차 등에 대한 설명, 금융상품설명회에서의 일반적인 보험 상품의 구조나 활용법 등에 대한 설명,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행위는 **모집 행위 및 모집 관련 행위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예시

일본 사례

• 모집 관련 행위 관련 규제

- 모집 관련 행위는 모집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집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모집 관련 행위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제는 없음)
- 다만, 모집 관련 행위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하는 **보험회사·모집종사자에게 관리·감독 의무**

보험회사 및 모집종사자의 관리·감독시 유의할 사항

-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에 의해 **보험 모집이나 특별이익 제공 등 모집 규제의 잠탈로** 이어지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않은지
-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가 운영하는 비교사이트 등 상품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한 서비스에 있어서 **잘못된 상품 설명이나 특정 상품에 대한 부적절한 평가** 등 보험모집인이 모집 행위를 할 때에 고객이 올바르게 상품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않은지
-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되는 고객 동의 획득 등의 절차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는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설정 시에도 신중할 것
 - ✓ **고객의 수수료나 인센티브 보수(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의 경우 원래는 모집 관련 행위 종사자가 할 수 없는 구체적인 보험 상품의 추천·설명 행위(모집에 해당)를 할 개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지적

미국 사례

•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 미국 전미보험감독자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Insurance Commissioners, “NAIC”)의 모델법에 의하면 보험을 판매, 판매권유 또는 교섭하기 위해서는 보험모집인(Insurance Producer)으로서의 면허(License)가 필요

※ Producer Licensing Model Act (보험모집인 면허 모델법)

<p>판매 (Sell)</p>	<p>보험회사를 대신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고 보험계약을 교환하는 행위 (Exchange a contract of insurance by any means, for money or its equivalent, on behalf of an insurance company)</p>
<p>판매권유 (Solicit)</p>	<p>보험의 판매를 시도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 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에 청약하도록 요청 또는 설득하는 행위 (Attempting to sell insurance or asking or urging a person to apply for a particular kind of insurance from a particular company)</p>
<p>교섭 (Negotiate)</p>	<p>특정 보험계약의 급부나 계약조건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가망고객과 직접 상의하거나 그들에게 직접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다만 해당 행위를 하는 자가 직접 보험을 판매하거나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을 조달해오는 경우 (Conferring directly with or offering advice directly to a purchaser or prospective purchaser of a particular contract of insurance concerning any of the substantive benefits, terms or conditions of the contract, provided that the person engaged in that act either sells insurance or obtains insurance from insurers for purchasers)</p>

미국 사례

• 보험 모집 행위의 범위

- NAIC는 실무지침을 통하여 모집 행위와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 사무 행위(Clerical acts)를 예시
 - ※ Implementation Guidelines of the Producer Licensing Model Act (보험모집인 면허 모델법 실무지침)

〈NAIC 실무지침 상 모집 행위 구분 (예시)〉

행 위	모집	단순 사무
브로셔 및 기타 일반적인 정보 제공 행위 (계약 조건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 없는 경우)		√
잠재적 보험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구매자 가이드, 담보 범위 선택 양식 등을 배포하는 행위		√
보험모집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보험계약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고 기록하는 행위		√
보험모집인과의 상담 일정을 잡는 행위		√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요율을 참고하여 요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담보 범위에 대해 설명, 논의, 해석하거나 의견 제시 또는 추천하는 행위	√	
잠재적 보험계약자의 연령, 건강, 또는 기타 위험 관련 조건의 영향에 대해 논의하는 행위	√	

미국 사례

• 소개비 관련 규제

- NAIC 모델법에서는 보험의 판매, 판매권유 또는 교섭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그에 대하여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규정 (Section 13.D)
- 한편,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이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지급하는 **소개비**(Compensation for Referral)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제**를 하고 있는 주도 있음
 - ✓ 뉴욕주 보험법상, 모집의 정도에 이르지 않고 특정 보험 상품의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를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소개 행위의 경우에도, 그 소개에 대한 대가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것이 금지됨
 - ✓ 델라웨어주 보험법에서는, 모집 자격 없는 자가 특정 보험 상품의 계약 조건에 대해 논의하거나 보험에 대해 의견 또는 조언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단지 고객 또는 잠재고객을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에게 소개하는 경우 그러한 소개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다만 해당 소개비는 ① 각 소개 건당 명목상의 작은 금액(Nominal), 1회성 지급(On a 1-time basis) 및 소개 건당 고정금액(Fixed in amount by referral)이어야 하고 ② 고객 또는 잠재고객이 실제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③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연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영국 사례

• 규제대상행위로서의 보험 모집 등의 행위

- 영국 금융서비스시장법(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에 의하면 영국 내에서 **규제대상행위**를 **영업으로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가를 받거나 인가 면제 대상에 해당해야 함
- The Regulated Activities Order(규제대상행위에 대한 명령)에 의하면 보험 모집 등과 관련해서 다음의 행위가 규제대상행위에 해당

규제대상행위

- ①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행위** (Dealing in investments as agent)
- ② **보험계약에 대한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 (Arranging deals in investments)
- ③ **보험계약의 관리 및 이행을 지원하는 행위** (Assisting in the administration and performance of a contract of insurance)
- ④ **보험계약에 관하여 조언하는 행위** (Advising on investments)
- ⑤ **위 행위들을 행하기로 약정하는 행위** (Agreeing to carry on specified types of activity)

영국 사례

•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한 세부적 판단 기준

- 영국 금융감독당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은 보험 모집 관련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
 - * The Perimeter Guidance manual, Chapter 5, 「Guidance on the Insurance Mediation Activities」, (“PERG”)
- 특히 “보험계약에 대한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제②유형) 및 “보험계약에 관하여 조언하는 행위”(제④유형) 관련하여 규제대상행위 해당 여부가 빈번하게 문제될 수 있음
 - ✓ 제①유형인 “대리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행위”는 실제로 보험계약자나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을 구입·판매·가입·인수하는 행위로서 비교적 그 내용이나 범위가 명확
 - ✓ 제③유형인 “보험계약의 관리 및 이행을 지원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그 관리 및 이행을 지원하는 경우로서 주로 클레임 처리와 관련
 - ✓ 제⑤유형은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수행하기로 약속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가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영국 사례

• 보험계약에 대한 거래를 주선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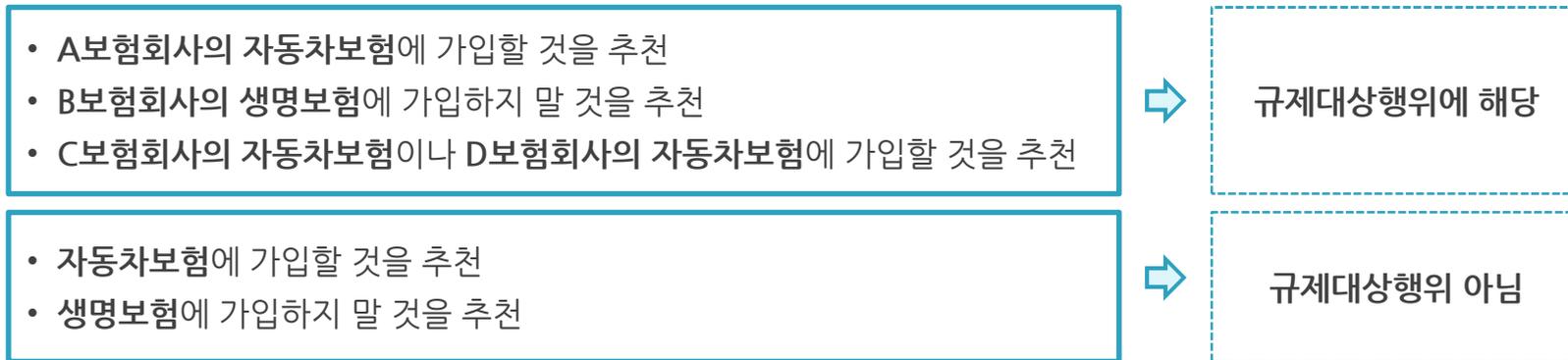
- 실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를 주선하는 행위 (예: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계약 조건에 관해 협상하는 행위 등)
- 실제로 보험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라도 거래를 성사시킬 목적으로 주선하는 행위

주선 행위 예시	주선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재적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행위 • 보험모집인에게 고객을 소개시켜 주는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회적 소개에 그치는 경우 • 단순히 보험 광고물을 수동적으로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p>주요 예외사유 (Exclus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모집이 아닌 본업을 수행하면서 해당 본업에 부수하여 보험계약자나 잠재적 보험계약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 치과의사가 치아보험에 대한 정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 제공 행위와 본업과의 사이에 본질적 연관성이 있을 것, 정보 제공이 독자적인 사업 수행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을 것 • 당사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만을 제공하는 경우 (예: 인터넷 서비스나 통신망 제공자가 단지 통신시설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수단 제공에서 나아가 프로모션 촉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영국 사례

• 보험계약에 관하여 조언하는 행위

- 조언이란 조언자 측의 의견이 개입되어 행동 방침에 대한 권고를 하는 것을 의미
- 규제대상행위에 해당하려면 해당 조언이 **특정한 보험계약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특정 보험회사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일정한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언하는 경우는 규제대상행위 아님**



- 정기간행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뉴스 서비스, 방송에서 이루어지는 조언의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

영국 사례

• 규제대상행위 분석표

〈PERG 규제대상행위 분석표 (예시)〉

행 위	규제대상행위 여부	근거
정보의 수동적 게시 행위(대가 지급 여부 불문)	X	• 단순한 정보 게시는 규제대상행위 아님
고객에게 보험회사·보험모집인을 추천하고 보험회사·보험모집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	O	• 원칙적으로 주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본업에 부수한 정보 제공 예외사유 있음
보험회사·보험모집인에게 고객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행위	O	• 정기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고객 소개는 주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본업에 부수한 정보 제공 예외사유 적용 없음 (위 예외사유는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에 한정)
고객과 특정 종류의 보험의 필요성이나 필요한 담보 수준에 대해 논의하는 행위	X	• 원칙적으로 이 정도는 주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해당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판단 필요
특정 보험계약의 조건을 설명하거나 다수의 보험계약의 조건을 비교하는 행위	O	• 원칙적으로 주선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다만 본업에 부수한 정보 제공 예외사유 있음
잠재적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기재를 도와주는 행위	O	• 주선 행위에 해당
내용 확인 및 보험회사에의 전달을 위해 보험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를 수령하는 행위	O	• 주선 행위에 해당

IV.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 제안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

• 보험 모집 행위의 범위 확정 시 고려 사항

<p>행위의 실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통념상 보험계약의 성립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p>∨ 판례상 기준 및 상법상 중개 행위에 대한 해석론 참고</p>
<p>규제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약 해당 행위가 모집 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적정하게 수행되지 않을 경우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p>∨ 보험업법상 모집 행위 규제의 입법 취지 고려</p>
<p>법체계와의 정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행위 및 모집과 구분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부합하는지 <p>∨ 보험계약에 관한 비교·공시 행위와의 구분 등</p>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

•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 제안

- 보험 모집에 해당할 수 있는 핵심 유형

①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

②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

③ 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로서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특정 보험 상품이나 적어도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을 전제로 할 것

∨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보험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설명이나 권유라면 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

• 보험 모집 행위의 판단 기준 제안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

- 특정 보험 상품의 계약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행위
- 광고물의 수동적 게시, 보험업법규상 인정되는 비교·공시 행위와는 구분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

- 순수한 정보 제공인지 보험계약 체결의 권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자의 발언이나 게시물의 내용 및 정도, 보험계약자와 행위자와의 관계, 보험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미친 영향,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행위자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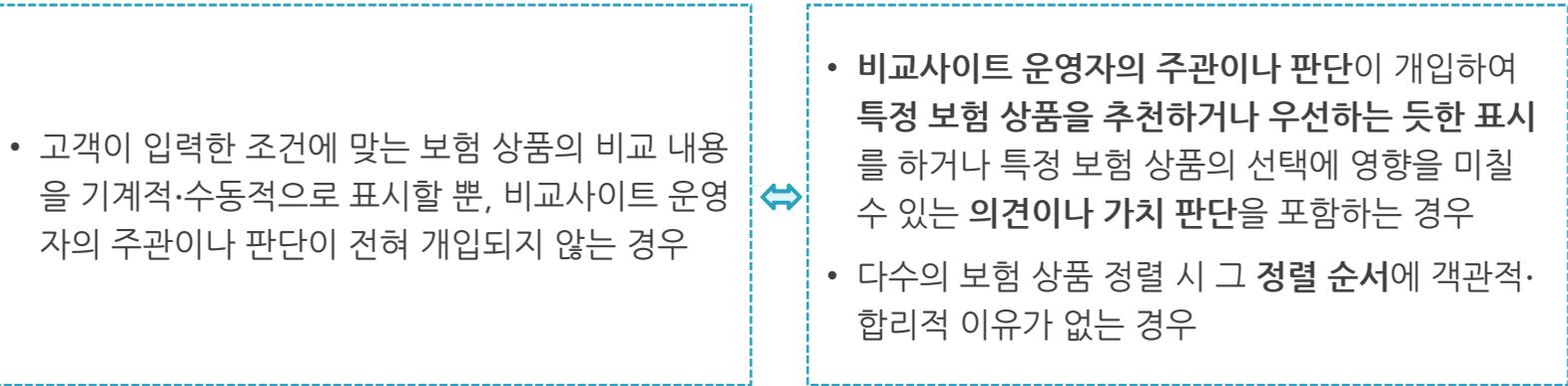
기타 특정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적극적 개입 행위로서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행하지 아니하면 소비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 보험계약자의 청약서 등 신청서류 작성에 대해 설명해주거나 신청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행위, 신청서류를 수령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주는 행위 등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 분석 (예시)

• 비교사이트 운영

- 비교사이트 내에서 직접 보험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 → 모집 해당 가능
- 보험업법규상 요건을 갖추어 행해지는 비교·공시의 경우 → 모집에 해당하지 않음
- 보험업법규상 비교·공시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사이트 운영 (예: 일부 보험회사에 대한 비교 정보만 제공)
→ **비교사이트의 구성, 게시 내용 및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중립적 정보 제공인지 특정 보험 상품의 추천 및 가입 권유인지 여부를 살펴야 할 것



보험 모집 행위 해당 여부 분석 (예시)

• 지인 소개·추천

- 특정 보험 상품 또는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 상품을 추천하거나 설명하는 행위가 개입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
- 보험 상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이 단순히 지인을 보험회사·모집종사자에게 소개하거나 보험회사·모집종사자에게 지인의 연락처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모집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 보험가입상황 진단 및 보험 추천 서비스

- 특정 보험 상품 또는 특정 보험회사의 특정 종류의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것인지, 일반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보험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것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

맺음말

- **법규, 감독당국의 지침, 유권해석 등을 통해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의 정의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
 - 감독당국 지침이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
 - 양자를 병행하는 방안

- **향후 추가 고려 사항(1) - “모집 관련 행위” 도입 방안**
 - 일본의 “모집 관련 행위” 개념 신설 사례를 참고
 - 넓은 의미에서의 모집 프로세스 중 반드시 모집 자격이 있는 자에 의해 행해질 필요까지는 없지만 일정한 규율 대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들을 “모집 관련 행위”로 분류
 - 우선은 보험회사나 모집종사자가 모집 자격 없는 제3자에게 모집 관련 행위를 위탁함에 있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규율
 - 향후 모집 관련 행위에 대해 별도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경우, 모집 관련 행위나 모집 관련 행위자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방법도 고려 가능

맺음말

• 향후 추가 고려 사항(2) - 소개비 관련 규제 조항 신설 방안

- 모집 해당 여부 판단 시 기본적으로는 해당 행위의 실질을 먼저 따져야 할 것이며 대가 지급 자체가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해당 행위의 목적이나 실질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대가 지급 여부가 간접적 근거가 될 것임
- 무자격자에게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한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 모집 행위에까지 나아갈 개연성을 높일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정책적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음
- 상담·소개나 모집 관련 행위(구체화 필요) 등의 대가를 보험계약 체결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별도의 명시적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

• 기타 추가 고려 사항

-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 위탁 금지 규제에 있어 계속성·반복성 등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
- 가격비교사이트에 대해 공시의무 등 일정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 개념상 모집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모집 자격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안 등

감사합니다